#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59

발의연월일: 2022. 10. 19.

발 의 자: 박대출・이양수・조은희

강대식 · 신원식 · 정경희

송언석 · 서영교 · 최영희

김영식 · 최형두 · 최춘식

권명호 • 박형수 • 김정재

김상훈 • 박성민 • 이종성

조명희ㆍ이 용ㆍ전주혜

노용호 • 안병길 • 양금희

서일준 • 황보승희 • 임병헌

김미애 · 이만희 · 배준영

의원(3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 결정 또는 검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매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관세행정 지원 성격의 업무를 위주로 수행하고 있어 국회 등으

로부터 원산지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저가 수입산의 국산 둔갑에 따른 소비자와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원산지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에서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3조의2 개정).

## 주요내용

- 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함(안 제233조의2제1항).
- 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33조의2제4 항).
- 다.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33조의2제5항).
- 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한국원산지정보원

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33조의2제6항·제7항).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보워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정책·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 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⑤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은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 ②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

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 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 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 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 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 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 (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
- ④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정책·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 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

   런 교육·전문인력양성에 필

   요한 사업
-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⑤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난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 를 지도·감독한다.